

수원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55665 판결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55665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23253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캡

담당변호사 정승호

피고, 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이라인

담당변호사 박광지

변론종결 2024. 3. 8.

판결선고 2024. 3. 2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232538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4,100,000원 및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10,1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C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 B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 :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4, 5행의 각 “J”을 “H”으로, 제7행의 “922,528,000원”을

“822,528,000원”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진, 판사 김범준, 판사 박수미